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산안 등 국회 제출 시한 변경〉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23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예산안 등 국회 제출 시한 변경(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안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0. 30.

다. 회 부 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와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경기 둔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의 영향으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 원의 세수 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 원 규모의 세수 핑크가 발생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수입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에 맞는 지출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나라 살림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함.

그러나 이러한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 가운데에는 국회 제출 시기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매년 9월 초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진 세수 추계를 끝내야 하지만, 8월 중순이면 기껏해야 일부 기업의 2분기 실적 정도만 알 수 있는 시점이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도, 상반기 실적 발표 후 조정되는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치도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그해 하반기부터

이듬해 연말까지 국내외 경기사이클,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과 이익, 주식·부동산 등의 가격과 거래량까지 추정해 이듬해 세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날이 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며 성장률과 세수 간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부터 지정학적 갈등까지 변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결국 세수 오차를 낳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함.

이에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환원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오차를 줄이고, 보다 여유 있게 예산안 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예산안 등 국회 제출 시한 변경(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안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 예산안 등 국회 제출 시한 - 회계연도 개시 <u>120일 전까지</u>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국가재정운 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등)	○ 예산안 등 국회 제출 시한 - 회계연도 개시 <u>90일 전까지</u>

개정안은 현행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국회 제출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변경하
려는 것임.

헌법 제54조제2항¹⁾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3년 개정 전 「국가
재정법」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
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
지 완료되지 않아 국회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매년 반

1)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복되자,²⁾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³⁾을 신설(2015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적용)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음. 이와 함께 부대의견을 통해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을 앞당기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음.

이후 2013년 당시 여·야는 국회의 충분한 예산안 심사기간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한을 앞당기기로 합의하였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이를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음.

이는 법정처리기한 준수를 위해 예산안 심사의 부실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법 부칙에 따라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제출일을 10일씩 앞당겼고, 2017년도 예산안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를

2) [참고] 연도별 예산안 국회 심의 일자 참조

3)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통해 당초 60일이었던 국회 예산안 심사기간이 90일로 확대되었음.

개정안은 예산안의 국회 조기 제출이 최근 계속되는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 발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예산안 제출 시한을 법 개정 이전과 같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다시 환원하려는 취지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수 추계는 통상 7~8월에 이루어지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세수 추계 시점도 한달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3분기 경제지표, 법인세 중간예납(8월말) 결과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세수 추계시 반영할 수 있어 최근 계속되는 세수 오차⁴⁾를 줄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부처별 예산요구서 제출(5월말) 후 예산안 확정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확보되어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예산안을 검토·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헌법과 법률을 일치시켜 법률의 헌법적합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4) 연도별 국세세입 본예산 및 수납실적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본예산(A)	221.1	222.9	242.3	268.1	294.8	292	282.7	343.4	400.5	367.3
실 적(B)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36.5
초과세수(C=B-A)	△3.3	19.6	23.1	25.4	△1.3	△6.5	61.3	52.6	△56.4	△30.8
세수오차율(C/A)	△1.5	8.8	9.5	9.5	△0.5	△2.2	21.7	15.3	△14.1	△8.4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현황 참조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기는 세수추계의 시차뿐만 아니라 2013년 법 개정취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산안 제출 시한을 앞당긴 2013년 법 개정 취지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세수 추계모형 고도화 및 추계절차 개선방안 마련, 주요 경제지표 전망의 정확성 제고방안 마련 등 정부의 세수추계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⁵⁾

또한,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의 변경 없이 11월에 다음연도 예산안에 대해 세수재추계를 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입예산안을 조정하는 개정안⁶⁾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5) 기획재정부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국회·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면서 정부 추계모형과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공개하고 세목별 여건·추계방식 등을 원점에서 논의하며, AI·빅데이터 기반 추계모형 개발 등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자료: 「최근 경제 동향과 세수재추계 등 주요 현안」, 2024. 9)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21)

참고로, 국회 예산안 심의가 체계적·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사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긴 예산 심사기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외 주요국의 예산안 심사기간]

구 분	회계연도 개시	예산안 제출 시기	의회 심사	심사기간
미 국	10월 1일	2월 15일	2월~6월	약 150일
일 본	4월 1일	1월	1월 말~3월 말	약 70일
영 국	4월 1일	세입예산안: 3월 세출예산안: 4~5월	3월 말~8월 초	약 150일
프랑스	1월 1일	전년도 10월 첫째 화요일	10월~12월	약 70일
독 일	1월 1일	통상 전년도 8월	8월~12월	약 150일
스웨덴	1월 1일	전년도 9월20일	9월 중~12월 중	약 90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u>120</u>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⑪ (생략)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90 일 -----.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u>120</u> 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 ----- 9 0일 ----- -----.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u>120</u>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 ----- ----- 90일 -----.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 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u>120</u> 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 ----- ----- ----- 90일 ----- -----. ----- ----- ----- -----. ②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

참고

연도별 예산안 국회 심의 일자

구 분	국회 제출	대통령 시정연설	예결위 심사 개시	본회의 의결
2025년도 예산안	2024. 9. 2.	11. 4. (국무총리 연설)	11. 7.	12. 10.
2024년도 예산안	2023. 9. 1.	10. 31.	11. 3.	12. 21.
2023년도 예산안	2022. 9. 2.	10. 25.	11. 7.	12. 24.
2022년도 예산안	2021. 9. 3.	10. 25.	11. 5.	12. 3.
2021년도 예산안	2020. 9. 3.	10. 28.	11. 4.	12. 2.
2020년도 예산안	2019. 9. 3.	10. 22.	10. 28.	12.10.
2019년도 예산안	2018. 9. 3.	11. 1.	11. 5.	12. 8.
2018년도 예산안	2017. 9. 1.	11. 1.	11. 6.	12. 6.
2017년도 예산안	2016. 9. 2.	10. 24.	10. 26.	12. 3.
2016년도 예산안	2015. 9. 11.	10. 27.	10. 28.	12. 3.
2015년도 예산안	2014. 9. 22.	10. 29.	11. 6.	12. 2.
2014년도 예산안	2013. 10. 2.	11. 18.	12. 4.	2014. 1. 1.
2013년도 예산안	2012. 9. 28.	10. 4.	11. 31.	2013. 1. 1.
2012년도 예산안	2011. 9. 30.	10. 10.	11. 7.	12. 31.
2011년도 예산안	2010. 10. 1.	10. 25.	11. 17.	12. 8.
2010년도 예산안	2009. 10. 1.	11. 2.	12. 7.	12. 31.
2009년도 예산안	2008. 10. 2.	10. 27.	11. 19.	12. 13.
2008년도 예산안	2007. 10. 1.	10. 8.	11. 12.	12. 28.
2007년도 예산안	2006. 9. 29.	11. 6.	11. 23.	12. 27.
2006년도 예산안	2005. 9. 30.	10. 12.	11. 14.	12. 30.

